

## 한국은행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 □ 법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등의 금융거래내역 정보
2.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
4.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전 소송관련 정보
5. 외국환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과 관련된 정보
6.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7. 국채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채등록부 및 그 부분
8. 기타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을지 연습, 직장에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

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2.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3. 각종 정보통신망 현황 및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 및 보안유지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음어·약호자재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중앙은행 중요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외국정부, 외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와 상호비공개조건으로 생산·접수한 문서 및 주요 정책협력과 관련한 내부검토의견수렴·조정평가정책결정 사항 등 공개할 경우 국익을 저해하거나 외교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5. 국방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북한경제 관련 연구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외교관계 등에 혼란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외화자산 국외운용 현황과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국가의 대외신인도 또는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8. 부서별 비상계획 및 업무지속계획 등 중앙은행의 안전과 보안에 관련된 정보
9. 중요설계도면, 시설방호, 무기탄약관련 정보, 방호장비 설치 및 관리관련 정보 등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 중요시설인 중앙은행의 인원시설의 보호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업무상 지득한 개인 등의 금융거래내역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재산 보호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외환정책수행 및 외화자산 운용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환정책의 효과성 또는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헌법소원, 행정심판소송과 관련된 청구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 소송준비 또는 수행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화폐의 위조방지장치, 화폐제조, 화폐현수송 및 화폐의 지급보관·관리 등 범죄의 예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사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거나 불가피하게 보안유지가 필요한 정보
2. 감사감독검사규제 등의 활동중 생산된 문서와 그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인사노무관리, 보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채용, 임면, 승진(급), 근무평정, 교육훈련, 인사교류, 보상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6. 각종 제도개선 추진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7.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8. 연구검토 중이거나 공식 발표 이전의 통계 자료로서 공개시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9. 통화신용정책 및 당행 출자출연기관 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관련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 또는 경제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거나 특정 금융기관 등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또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10. 위원회, 심의회, 각종 회의 및 기타 대정부 정책협의 관련 자료 또는 내부 심의, 협의, 조사 등의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토론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 포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

-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검사, 조사 등 관련 정보
  3. 시험원사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4. 경비지출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금액 및 내역 등 직원 또는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
  5. 특정 임직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8. 외환거래, 외환거래 모니터링 및 공동검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기업의 개별사항이 포함된 정보
  9. 채권압류, 대어금 지급, 신원조회 의뢰, 직원의인력 근로계약 체결, 부동산 매각계약 체결, 어권 및 비자신청 관련 문서 등과 관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신상에 관한 민감한 정보
  10. 대출거래신청서, 화폐지급거래등록서, 위조화폐발견신고, 수입인지 판매 계약 체결(변경, 해지), 화폐 및 소손권교환 등과 관련한 개인 인적사항 및 기업 내부 정보사항 노출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11.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개인정보

□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법령 등에 의하여 업무수행중 취득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또는 비공개 조건으로 취득한 정보
2. 감독검사 정책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금융시장에 현저하게 혼란을 초래하거나 특정 금융기관 등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3.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4.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업무수행중 취득한 법인 등의 경영방침, 조직관리, 비상계획 등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공개됨으로써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금융관련 정보